

부록 2-가-1

관세율할당 운영: 한국

1.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. 특히, 이 부록에 포함된 뉴질랜드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.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,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뉴질랜드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. 더 나아가,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.

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(지방 1.5퍼센트 미만)과 버터밀크
 분상의 밀크와 크림(가당 및 무가당, 지방 1.5퍼센트 초과)(전지분유)
 밀크와 크림(연유)(가당 또는 무가당 및/또는 농축하지 않은 것)

2. 가.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뉴질랜드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.

연도	물량 (메트릭톤)
1	1,500
2	1,545
3	1,591
4	1,639
5	1,688
6	1,739
7	1,791
8	1,845
9	1,900
10	1,957

이행 10년차 후부터,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0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.

- 나.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-가의 제3항너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.

- 다.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: 0402101010, 0402101090, 0402109000, 0403901000, 0402211000, 0402219000, 0402290000, 0402911000, 0402919000, 0402991000 및 0402999000

버터 및 우유 추출 기타 유지방

3. 가. 특정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뉴질랜드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.

연도	물량 (메트릭톤)
1	800
2	824
3	849
4	874
5	900
6	927
7	955
8	984
9	1,013
10	무제한

- 나.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-가의 제3항바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10에 따라 철폐된다.
- 다.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: 0405100000 및 0405900000.

치즈(신선, 갈았거나 분상인 것, 가공한 것,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종류)

4. 가. 특정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뉴질랜드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.

연도	물량 (메트릭톤)
1	7,000
2	7,210
3	7,426
4	7,649
5	7,879
6	8,115
7	5,669
8	5,839
9	6,014
10	6,194
11	6,380
12	2,112
13	2,175
14	2,241
15	무제한

한국낙농육우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,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하여 배분한다. 쿼터는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선적 수량으로,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배분된다.

- 나.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에 따라 철폐된다.

- 1) HSK 세번 0406901000은 부속서 2-가의 제3항마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7
- 2) HSK 세번 0406101010은 부속서 2-가의 제3항사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12, 그리고
- 3) HSK 세번 0406101020, 0406101090, 0406200000, 0406300000, 0406902000, 0406903000, 0406904000 및 0406909000은 부속서 2-가의 제3항자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15

- 다.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.

- 1) 이행 1년차부터 이행 6년차까지는 0406101010, 0406101020, 0406101090, 0406200000, 0406300000, 0406901000, 0406902000, 0406903000, 0406904000 및 0406909000
- 2) 이행 7년차부터 이행 11년차까지는 0406101010, 0406101020, 0406101090, 0406200000, 0406300000, 0406902000, 0406903000, 0406904000 및 0406909000, 그리고
- 3) 이행 12년차부터 이행 14년차까지는 0406101020, 0406101090, 0406200000, 0406300000, 0406902000, 0406903000, 0406904000 및 0406909000

홍합

5. 가.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뉴질랜드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.

연도	물량 (메트릭톤)
1	1,600
2	1,701
3	1,808
4	1,922
5	2,043
6	2,172
7	2,308
8	2,454
9	2,608
10	2,773
11	2,947
12	3,133
13	3,331
14	3,540
15	3,763
16	3,999

이행 16년차 후부터,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6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.

쿼터 연도의 첫째 날부터 홍합에 대한 쿼터 내 물량의 50퍼센트는 선착순 방식에 따라 반입된다. 한국이 선착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, 한국은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제품의 소진된 쿼터 물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

- 나.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-가의 제3항너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.
- 다.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: 1605909040

조제분유 및 기타

6. 가.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뉴질랜드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.

연도	물량 (메트릭톤)
1	230
2	235
3	239
4	244
5	249
6	254
7	259
8	264
9	269
10	275
11	280
12	286
13	3
14	3
15	무제한

한국낙농육우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,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한다. 쿼터는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선적 수량으로,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배분된다.

- 나.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에 따라 철폐된다.

- 1) HSK 세번 1901101010은 부속서 2-가의 제3항아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13, 그리고
- 2) HSK 세번 1901101090은 부속서 2-가의 제3항자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15

- 다.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.

- 1)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2년차까지는 1901101010 및 1901101090, 그리고
- 2) 이행 13년차부터 이행 14년차까지는 1901101090

부속서 2-나
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

한국 양허표

1. 이 부속서는 제2.14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,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,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.

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,

적용범위: HSK 세번 0201100000, 0201201000, 0201209000, 0201300000, 0202100000, 0202201000, 0202209000 및 0202300000

이행년도	1	2	3	4	5	6
발동수준 (메트릭톤)	37,000	37,740	38,495	39,265	40,050	40,851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40	40	40	40	40	30

이행년도	7	8	9	10	11	12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1,668	42,501	43,351	44,218	45,103	46,005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30	30	30	30	24	24

이행년도	13	14	15	16
발동수준 (메트릭톤)	46,925	47,863	48,821	해당 없음
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(%)	24	24	24	0

2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위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.